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의안 번호	67
----------	----

제출년월일 : 1992년 4월 28일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우리구 의회도 집행기관의 '91회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여 승인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여 효율적인 검사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검사위원의 자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다음 각항1에 해당하는 자

- (1) 영등포구의회 의원
- (2) 공인회계사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3)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자

나. 선임방법

-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공인회계사 1인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
- (2) 선임된 검사위원중 대표자는 의원으로 하되 연장자로 한다.

3.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4. 선임안 :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1. 목 적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검사위원의 자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다음 각항1에 해당하는 자

가. 영등포구의회 의원

나. 공인회계사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다.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자.

3. 선임방법

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공인회계사 1인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

나. 선임된 검사위원중 대표자는 의원으로 하되 연장자로 한다.

4. 결산검사사항

가. 세입·세출의 결산

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라.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마. 금고의 결산

5. 결산검사기관 및 검사 의견서 제출

가.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에 연장할 수 있다.

나.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기타사항

가.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상 임 위 원 회 현 황

상임위명	위원장	간사	원
운영 위원회	김대섭	임병섭	김종구, 권혁필, 최락희, 안주영 윤태봉, 이용주, 정종태
행정재무 위원회	김동기	김종구	김대섭, 서홍선, 양운섭, 이증식 임병섭, 정종태, 최규락, 최수영 한기태
시민보사 위원회	이강위	윤태봉	김진국, 김형수, 우일현, 조연제 최락희, 최준화
도시건설 위원회	홍상기	이용주	고광택, 권혁필, 김명환, 김형기 배기한, 심정기, 안주영, 이영규 이윤중, 임창수, 정준탁